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 Q 신고포상금 제도란?

A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18년 기준, '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Q 포상금은 신고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A

네,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

### Q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A

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신고전화(☎112) 또는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신고해요.

### Q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해요?

A

수사기관에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 ※ 지급신청서 작성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주제별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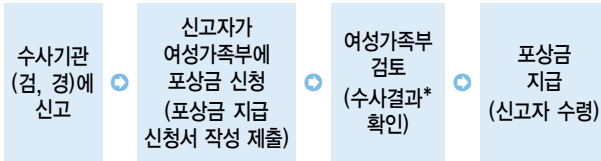
•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  
(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02-2100-6407)

• 우편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우)03171

### Q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

### Q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은?

A

| 포상금   |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
|-------|---|
| 10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률*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li> <li>-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li> </ul> </li> <li>■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률*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li> <li>-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li> <li>-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범죄</li> <li>-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li> </ul> </li> <li>■ 알선영업행위 등(법률*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業)으로 하거나,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범죄</li> <li>- 성매수 장소 제공이나 알선 또는 알선정보제공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범죄</li> <li>-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범죄</li> </ul> </li> </ul> |
| 7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 등(법률*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li> <li>-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li> </ul> </li> </ul>  |

\* 근거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의무 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Q 신고의무자 인가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어요.

### Q 신고의무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등은 범죄에 해당되므로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 Q 신고를 하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안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66

### Q 신고를 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 책임자(시설장)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해요. 한편,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신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해 주세요.

※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운영책임자(시설장)나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어요.

### Q 왜 빨리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거확보를 할 수 있어요

### Q 어디에 신고하나요?



수사기관(국번없이 전화 112, 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신고해요.

### Q 신고 하게 되면 경찰관서에서 번거롭게 하나요?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알게 된 내용만 정확하게 진술하면 돼요. 불가피한 경우 전화 진술도 가능해요.

### Q 혹시 신고가 망설여지나요?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를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어요.

